완도군의회 공고 제2026 - 34호

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11월 9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 : 박병수 의원 외 8명
3. 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에 따른 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제2조제2항 관련 별표(월정수당 지급기준표) 인상금액 반영

- 2027년 : 월액 2,170,270원(연액 26,043,240원)

→ 2026년 월정수당 금액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(3.5%)만큼 합산한 금액

- 2028년 ~ 2030년 : 전년도 월정수당 금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

5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6. 11. 9. ~ 2026. 11. 16.

6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회행정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01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7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(전화: 061-550-590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
「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의장 귀하

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1 **현행**

[별표]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2항 관련)

연 도	금 액	비 고
2023	연 23,435,520원(월 1,952,960원)	‘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(1.4% 반영)
2024	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	
2025	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	
2026	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	

붙임2 개정안

[별표]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2항 관련)

연 도	금 액	비 고
2027	연 26,043,240원(월 2,170,270원)	‘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(3.5% 반영)
2028	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	
2029	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	
2030	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	